울산우체국 제1회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공고

울산우체국에서 우편물 수집과 배달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0.

울산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 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비고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일반 1명**	울산우체국 (울산시 중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우편물 구분 및 상·하차 보조등 집배업무 전반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공무직 근로자 (비공무원)

※ **기간제**로 운영되며, 추후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채용 시 지원 가능하지만 기간제 경력이 반드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님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다. 보 수 : 약 2,200,000원(기본급 + 기본수당) + 실적수당 등

- ㅇ 기본급 : 1,920,740원
- ㅇ 기본수당 : 운전수당,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 ㅇ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ㅇ 기타수당 : 가족수당, 명절보로금
- ㅇ 기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라. 근무시간 : **주 5일(월 ~ 금), 1일 8시간(기본근무 : 08시 ~ 17시)**

- ㅇ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마.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바. 집배업무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상당(최대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위 두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참고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중 조건 : J(다륜형)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는 한정면허임)

다.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은 제외)이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단, 출·퇴근이 가능한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ㅇ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 2차 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체력 측정(2종목):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평가방법 및 기준표: 【붙임5】 참조
○ 체력 검정 면제 :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제출자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
* 인증일이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 인증서(3등급이상)에 한함

※ 실기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5. 응시서류 접수

가. 모집공고 : 2024. 2. 20.(화) ~ 2. 27.(화)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2. 20.(화) ~ 2. 27.(화) 18:00까지

다. 원서교부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방법은 【붙임6】 「응시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참조
또는 고용24 콜센터(1577-7114) 문의

※ 최종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관리 - 알선/입사지원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마. 구비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시 PDF · JPG 파일(응시분야_성명_서류명)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제출(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

※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울산시 중구 구교로 77. 울산우체국 지원과 인사담당앞
구비서류 재중 우편번호 : 44521
- 우편 제출은 마감일 소인분(익일특급)까지 유효함
-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29.(목)

나. 실기 및 면접시험 : 2024. 3. 5.(화)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 5.(화) 15시 이후

라.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울산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마. 실기·면접시험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다.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1부

ㅇ **면허발급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도록 조회된 증명서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

라.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주소변동 이력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하여 발급**

마.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3】

바.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국민체력 100」 인증서는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취득분을 실기시험 전까지 제출할 경우 체력검정 면제

※ **각 서류는 공고일(2024. 2. 20.)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본 인쇄 출력할 것, '모아찍기(양면인쇄)' 접수불가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울산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울산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울산우체국 방문신청, 팩스(0505-005-1512) 또는 이메일(tax60001720@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ㅇ 울산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채용시점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3개월이상 상근시)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우체국 지원과(052-701-1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